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에 관한 연구*

최 병 철

사회과학부 경제학 전공

<요 약>

대부분의 환경규제는 제품의 전주기(Life Cycle)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논의는 수입품의 PPMs에 근거하여 수입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모아졌다. PPMs 관련 조치는 환경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무역조치는 PPMs에 근거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다. 단지 제품기준 또는 PPMs 기준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은 지구적 환경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의 틀안에서는 허용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월정성, 지구적 환경영향이 없는 경우에 수입국의 PPMs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PPMs에 대한 환경요건은 국내 환경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건이 제품의 국가간 교역에 적용되어 수입품에 대해 무역조치가 취해질 경우, 관련 환경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을 벗어나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오용 혹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무역조치는 타국의 환경관련 정책 및 조치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국의 정책 주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Trade Measures Based on the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PPMs)

Choi, Byong-Cheol

Professor of Economics

* 본 논문은 1998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bstracts>

Nowadays,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applied in the product life cycle and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PPMs). Therefore, facts that trade measures based on the PPMs are possible to apply for imported goods, are new issues. PPMs based measures are important environmental policy. But trade measures are not effective nor appropriate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based on PPMs.

Only, the use of product or PPMs based trade measures may be permitted in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promot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But without transboundary and global environmental impacts, trade measures for imported goods not complying with PPMs requirements of import country are inappropriate wi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goals. PPMs requirements are effective to address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But if those measures are applied to imported goods as trade measures, the potential for protectionist abuse would be possible. Also, those measures may impinge the sovereignty because those trade measures can be enforced in order to change the foreign country's environmental policy and requirements.

I. 서론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반 대중의 환경인식 수준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규제의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다자간 환경협약과 개별국의 환경관련 조치가 상당한 무역효과를 수반하게 되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형태마저 띠게 되어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역규범과의 마찰소지를 지닌 무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다자간 환경협약이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조치를 도입하는 환경협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WTO,OECD 등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무역-환경의 연계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의 WTO 설립협정 전문에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이념으로 하던 GATT 전문에 없던 환경관련 문구가 추가되었다.¹⁾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의 기술장벽 협정,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지적재산권 협정,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 등에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자간 무역규범에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도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규정을 WTO 체제내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GATT/WTO 규정의 관련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에서는 환경관련 규정의 개정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

1) WTO 설립협정 전문에는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발전이란 목적에 의기하여 세계자원의 최적사용을 허용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보존하며,경제개발수준이 다른 각국들의 요구와 관심에 모순되지 않도록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인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루어지고 있다. WTO의 산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에서 선진국들은 환경목적 무역조치에 대해 WTO 차원에서의 기준과 근거가 제공될 수 있도록 GATT 제20조의 개정 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를 사전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설정을 위한 GATT 제20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PPMs)의 문제는 WTO 규범 하에서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수용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서 주요한 PPMs 논제는, 각국은 PPMs에 근거하여 제품에 대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있다. 현 무역규범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부여한 자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역규범은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근거하여 제품수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론자들은 대부분의 공정 및 생산방식이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무역규범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관련 환경기준이 설정·적용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매우 커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WTO의 무역규범과 조화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조치로서의 환경관세,기후변화 협약에 의거한 다자적 환경조치인 국제탄소세,이와 관련된 국경세조정,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제 등은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논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 무역규범은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품비관련 PPMs의 포괄 문제는 역외성(extra-jurisdictionality) 문제와 함께 무역규범의 근간이 되는 기본틀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한편 기술장벽협정에 대한 우부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그 포괄범위를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제품관련 PPMs에 국한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데까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제II장에서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의 규범과의 관계를 다자간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일방조치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III장 이하에서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와 WTO의 규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다루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PPMs에 대한 논제를 세웠다.

- (1) 어떠한 조건하에서 각국은 PPMs에 근거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것인가?
- (2) 어떠한 제한조치가 주어진 환경영향과 무역영향에 가장 적합한가?
- (3) 어떠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논제를 중심으로 제III장에서는 PPMs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제IV장에서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 이외의 다른 비무역조치 혹은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다루었다. 끝으로 제VI장에서는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의 규범과의 관계에 대한 요약과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에 대한 결론을 기술하였다.

II.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 규범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제품의 생산 및 교역이 우려할 만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혹은 특정 환경보전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대부분의 환경규제는 제품의 전주기(Life Cycle)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논의는 수입품의 공정 및 생산방식에 근거하여 수입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모아졌다. 특히 선진국은 PPMs에 대한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그 형태에 따라 국가간 교역을 규율하는 WTO 규범과 마찰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는 환경목적을 위하여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와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로 대별할 수 있다.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 각국의 주권적인 결정사항이며, 월경성 및 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무역조치는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²⁾ 이에 따라 무역조치는 수입제한, 수출제한, 쿼타, 관세, 국경세 조정, 제재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

OECD(1993)³⁾는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i) 환경기준의 형태(제품기준, 공정 및 생산방식 기준(PPMs)), ii) 환경문제의 지리적 범위(국내환경문제, 월경성 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 iii) 무역조치의 법적 기초(국제환경협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과, 국제환경협약에 의하여 허용,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한 경우, 국내법에 의거한 경우)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OECD의 환경관련 무역조치 분류

법률적 기초 지리적 범위	IEA에 의한 의무부과	IEA에 의한 허용	IEA와 관련	국내법에 의거
국내환경의 보호	제품 / PPMs	제품 / PPMs	제품 / PPMs	제품 / PPMs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제품 / PPMs	제품 / PPMs	제품 / PPMs	제품 / PPMs
지구환경의 보호	제품 / PPMs	제품 / PPMs	제품 / PPMs	제품 / PPMs

자료 : OECD(1993).

- 2)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로는 리우선언 및 의제 21이 있다. 리우선언 원칙 12에서는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조치는 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입국의 관할구역 밖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또한 월경성,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제 21은 제2장에서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및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적인 관계 확보’에 대한 당위성과 이에 필요한 각종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3) OECD(1993) 참조. OECD는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 대신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E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MEA는 대체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범세계적인 참여가 있는 IEA를 말하며, IEA는 이보다 좁은 범위의 환경협약을 말한다.

한편 Schoenbaum(1992)은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목적을 기준으로, i) 국내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ii)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iii) 타국의 부적절한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 iv) 유해제품, 폐기물 및 기술의 수출규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무역관련 조치는 GATT의 기본정신인 자유무역원칙을 따라야 한다. GATT/WTO의 자유무역원칙은 최혜국대우(제1조)와 내국민대우(제3조)를 근간으로 한다.⁴⁾ 그러나 GATT는 이러한 자유무역원칙의 예외로 국제수지(제12조, 18조), 안보(제21조), 심각한 산업피해(제19조), 환경관련 예외조항(제20조) 등을 두고 있다. 특히 환경관련 일반적 예외조항인 제20조 (b) 항과 (g)은 필요한 경우 GATT 제1조와 제3조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그러나 GATT 제20조의 (b)항 혹은 (g)항에 근거한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GATT/WTO의 규정에 합치되려면,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무역조치는 수입국의 국내환경보호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GATT/WTO의 규정은 예외적인 무역규제 조치를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 (1)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필요성).
- (2) 소기의 환경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당해 무역규제 조치보다도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최소무역제한성).
- (3) 다른 모든 국가들이 당해 무역규제 조치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추호의 애매 모호성도 없어야 한다(투명성).
- (4)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규제조치의 실시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비례성).
- (5) 무역규제 조치가 국내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규제조치와 보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보완성).

그리고 국내 환경분쟁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⁶⁾ 1995년부터 시행된 위생검역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⁷⁾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

- 4)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하면 한나라에 대하여 부여된 무역상 이익은 모든 여타 GATT 회원국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내국민대우 원칙은 모든 GATT 회원국은 수입채화에 대하여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 (like or competing)채화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5) 제20조 (b)항과 (g)항은 다사간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를 포함한 환경보호 목적으로 취하여진 각종 무역조치와 GATT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핵심적인 조항이다. (b)항은 인간 또는 농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항은 유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무역조치를 허용하되 이 조치가 그 자원의 국내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하여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 6) 기술장벽협정은 국가간의 기술표준의 차이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의 인간, 동,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해 그 국가 나름대로 제품 및 제품관련 PPMs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동시에 기술장벽협정은 이러한 조치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 자의적, 부당한 차별금지, ii) 보호주의적 남용금지, iii)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화 방지(최소무역제한), iv) 무차별원칙, v) 국내 여건에 적합할 경우 국제적 기준의 사용, vi) 사전 통보 및 협의절차, 이해당사자에 대해 의견제시 기회 부여, 문의처 설치 등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다.
- 7) SPS 협정은 “보건, 위생조치는 인간, 동,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인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을 때는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에서 새로이 채택된 TBT 협정문에서는 보건, 안전, 동식물, 보건 및 생명, 환경과 관련하여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PPMs)과 관련한 표준 및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GATT 규범에서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각국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타국에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문제, 지구환경 문제, 혹은 타국의 부적절한 환경조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무역조치는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1. 다자간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다자간 환경협약은 특정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이러한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도 국제적인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 발효중인 다자간 환경협약은 약 200여개이며, 이 중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19개로 이들은 대부분 특정 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무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다.⁸⁾ 다자간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의 유형을 보면 수출금지, 수입금지, 수출입시 일정한 요건 부과 등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있으며, 생산 및 소비금지,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 간접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특히 몬트리올의정서(1987), 바젤협약(1989), 웰링턴 협약(1989)은 제품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자간 환경협약 당사국간에 적용되는 무역조치로 인하여 동 다자간 환경협약의 당사국인 WTO 회원국간에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다자간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마찰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자간 환경협약이 비당사국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다자간 환경협약상 당사국간 및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조치는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에 위반될 수 있고, 당사국의 동종제품(like products)과 비당사국의 동종제품을 차별하기 때문에 GATT 제1조(최혜국 대우)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동종제품보다 수입상품을 덜 유리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GATT 제3조(내국민 대우)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무역조치가 GATT/WTO 규범과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20조의 규정들은 그 의미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⁹⁾

GATT 제1조 및 제3조의 의무는 동종제품(like products)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GATT 규범은 제품의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제품(products)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다자간 무역체제는 모든 동종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종제품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취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종제품에 대한 개념은 GATT 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수입품에 적용되는 무차별 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8)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다자간 환경협약을 부문별로 보면, 해양어업 및 포경관련 협약(1건), 동식물 보호관련 협약(10건), 핵 및 대기오염관련 협약(1건), 식물위생규제(4건), 동물학대(1건), 및 유해폐기물(2건) 등이다.

9) GATT 조항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허용범위를 판단한 대표적인 GATT 패널의 사례는 1991년 미국과 멕시코, 1994년 미국과 EC 사이에 있었던 두 개의 참치수입제한 사건이 있다. GATT 패널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PMs의 국가간 차이에 근거하여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차별적 조치는 GATT 규정에 어긋나며, 자국 관할구역 밖의 동물이나 유한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자국법을 강요하기 위해 취해지는 무역조치도 GATT 규범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GATT 패널은 동종제품을 구별하는데 있어 크게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먼저, 동종제품을 판단함에 있어 PPMs의 차이를 배제한 다음 제품의 유사성은 최종 생산물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그러나 물리적인 특성에 관한 해석도 최종품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성질에서 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GATT에서는 동종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동종제품에 대한 해석을 무역제한 조치의 목적에 따라 사례별로 해석하고 있다.¹⁰⁾

2.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일방조치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범은 어느 국가든 자국의 국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 무역조치가 시행되는 경우는, i) 수입국이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자국의 환경요건을 기반으로 수입제품에 대해 무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ii) 기존 다자간 환경협약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또는 특정 다자간 환경협약의 포괄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자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기준에 따라 무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iii) 원경성 혹은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한 관련 국가의 노력을 촉발·유도하거나, 다자간 환경협약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자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기준에 따라 무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iv) 수출국내에 국한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수입국이 자국의 제품비관련 PPMs 요건을 기반으로 무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수입국의 관할구역 밖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무역조치는 i) 동 무역조치가 수입국의 관할구역 밖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지의 여부,¹¹⁾ ii)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조치인지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TBT협정문은 일반적으로 각국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품관련 PPMs에 의거한 무역제한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GATT조문은 제품비관련 PPMs 무역조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조치 뿐만아니라, 일정조건하에서 타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무역조치가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그리고 다자간 무역규범에 일방조치에 관한 개념정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조치를 배격하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은 환경문제가 시급하고 불가역적인 경우,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어렵거나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방조치가 유효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역외의 환경문제나 PPMs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조치는 바람직하지도 유효하지도

10) 동종제품의 정의에 대한 사례별 검토기준: (1) 제품의 특성,속성 및 품질, (2) 원자재의 속성, (3) 제품의 최종용도 및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알콜 및 맥주음료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조치(1992)에 대한 GATT의 패널 보고서는 동종제품에 대한 결정은 물리적 특성 뿐만아니라 GATT 제3조의 목적(국내조세 및 규제조치에 대한 내국민 대우)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저알콜 맥주나 고알콜 맥주의 특성은 모두 물리적으로는 같으나 인간 건강의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알콜농도의 차이가 있으면 동종제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11) 리우선언의 원칙 12는 “수입국의 관할구역 밖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실제로 펠리 수정법에 의하여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다.즉,대만이 CITES상 규제대상 품목인 호플 및 서각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년 8월부터 1995년 6월까지 2,400만 달러 상당의 대만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월경성, 지구적 환경문제의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큰 일방적 무역조치보다는 국가간 합의에 기초한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III.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와 WTO 규범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무역규범 부합성 및 수용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공정 및 생산방식(PPMs)과 관련된 문제이다. 환경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제품자체의 환경위해적 성격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생산단계에 적용되는 환경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규제 조치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이나 품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무역조치를 중심으로 PPMs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공정 및 생산방식(PPMs) 요건

최근의 환경정책은 환경피해를 줄이고 제품의 전주기(life cycle)에 있어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내부화시키고자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는 제품 전주기의 서로 다른 다양한 단계(즉, 생산, 분배, 판매, 소비 및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규제는 제품의 질과 환경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PPMs까지도 규제하게 된다. 모든 PPMs 요건은 그 제품이 판매되기 전, 즉 생산단계에 적용된다.¹³⁾ 그리고 PPMs 요건의 목적은 주로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증진시키거나,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조절 내지는 감소시키는데 있다.

PPMs 요건을 공식화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한 방법은 제한된 기술로 생산하도록 지정된 PPMs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방법은 공해배출량을 명기하거나 혹은 피하여야 할 PPMs을 금지시킴으로써, 실제로 사용될 PPMs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PPMs 요건을 공식화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정책이 무역, 비용 혹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단 PPMs 요건이 부과되면 생산자들은 기존의 생산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방식의 수정은 특히 개도국의 생산자나 영세 생산자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PPMs 요건으로 인하여 생산시설이 이전될 수도 있으며, 생산구조의 변화는 무역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무역수단이 PPMs 요건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역과 PPMs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PPMs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즉, i) 직접규제(명령과 통제), ii) 경제적인 수단(오염권 할당, 재정적 조치, 소비자 선택을 통한 생산구조 영향), iii) 기업의 자발적 계획 등이다. 그리고 PPMs 요건이 수입품에 적용될 경우에, PPMs에 근거한 조치는 타국

13) PPMs 요건이란 제품의 생산단계 즉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기 전단계에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제품이 제조, 수확 혹은 채집되는 방식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으로 하여금 자국의 PPMs 요건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명백히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PPM에 근거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무역금지 혹은 제한, ii) 무역제재, iii) 관세, iv) 국경세 조정, v) 상계관세, vi) 의무적인 환경마크제 등이다.

PPMs에 대한 환경요건은 국내 환경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건이 제품의 국가간 교역에 적용되어 수입품에 대해 무역조치가 취해질 경우, 관련 환경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을 벗어나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오용 혹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무역조치는 타국의 환경관련 정책 및 조치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국의 정책 주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규범은 제품자체의 특성,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식에 기반한 무역조치는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투입요소,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공정 등에 기반한 무역조치는 포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역규범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무역조치가 GATT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2. PPMs의 유형과 특징

PPMs의 유형은 PPMs로 인한 환경영향이 제품 자체에 의해서 이전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즉, 환경영향이 교역된 제품에 의해서 이전되어 소비 외부경제(consumption externalities)를 유발시키는 제품관련 PPMs(Product-related PPMs)와, 환경영향이 교역된 제품에 의해서 이전되지 않는 생산 외부경제(production externalities)를 유발시키는 제품비관련 PPMs(Non product-related PPMs)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비 외부경제에 적용되는 환경적 요건은 제품이 소비될 때, 그리고 소비후 처분될 때 혹은 분배나 판매 단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영향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건은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⁴⁾ 따라서 환경관련 소비 외부경제는 주로 제품요건을 통해 규제받지만, 소비 제품의 환경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규제하고자 할 때는 PPMs 요건이 더욱 적절하다. 한편 생산 외부경제에 적용되는 환경적 요건은 주로 제품주기의 생산단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술요건 혹은 투입 원자재의 제한 등으로 나타나며,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¹⁵⁾

제품관련 PPMs과 제품비관련 PPMs를 구분하는 것은 GATT 규범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GATT는 제품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들이 정당하지 않은 무역제한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쿄라운드에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TBT 협정을 개정하여 제품요건의 범위를 제품의 특성 혹은 제품과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따라서 PPMs 요건이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 외부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TBT 협정과

14) 쇠고기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기준,우유의 살균에 관한 기준,농업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기준,목재의 화학물질 처리기준 등이다.

15)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CFC를 사용하는 기준,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기준 및 어업시 유자망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이다.

1995년부터 시행된 위생검역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에 의해서 인정되어 진다.

반면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비관련 PPMs 요건은 GATT 규범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대부분 역외성(extra-jurisdictionality)을 유발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범과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TBT 협정에서는 기술적 규제와 표준이외의 PPMs 조치로서의 경제적 수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생산 외부경제는 PPMs에 의해 초래되는 환경피해의 관할구역에 따라 여러형태로 구분된다. 따라서 PPMs는 환경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품관련 PPMs

제품관련 PPMs에서의 환경파괴는 제품 자체 혹은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물질에 의하여 발생된다. 제품관련 PPMs는 동종의 제품이더라도 PPMs의 차이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동제품이 수입국의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입국은 환경규제나 환경마크 혹은 다른 정책수단을 통하여 소비 외부효과를 내부화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제품관련 PPMs에 의한 PPMs 요건은 주로 특정한 PPMs 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제한을 통하여 수입품에 적용된다. 이러한 PPMs에 근거한 수입제한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조치 뿐만 아니라 다자간 환경협정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만약 여러나라에 의해 서로 다른 PPMs 요건이 적용될 경우에는 시장 분할이 이루어지고,국제무역과 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관련 PPMs 요건에 대한 상호인식과 국제적인 조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국은 환경부존과 환경 선호도 및 환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조화보다는 자국 자체의 요건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정적인 무역효과를 최소화 시키면서 PPMs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인 WTO의 TBT 협정을 피해가고 있다.

소비 외부효과를 갖는 교역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국은 다자간 무역규범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는 유해한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PPMs를 규제할 수 있는 자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제로부터 수입품이 제외된다면 국내규제를 수행하기는 힘들어 질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불필요한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비록 국내규제가 직접적인 무역제한이 아니더라도 제품관련 요건은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규범에 의하여 자국의 제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입국에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제품에 대한 금지와 규제가 허용되지만, 무역제한 조치로서의 새로운 PPMs 요건의 도입은 수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요건과 다르게 적용될 때 PPMs 요건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PPMs의 입증 체제에 대한 상호 인식이 필요하며,이러한 것은 국제적인 합의가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 PPMs와 관련된 제품의 특징들은 제품검사를 통한 입증이 어려울 때도 있으며 고도의 정밀한 시험과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증명서가 요구될 것이며 이는 수출국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WTO의 TBT 협정문은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PPMs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의한 제품관련 PPMs 요건의 경우에는 수입품간의 차별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협정문은 이러한 PPMs 요건이 합법적인 환경적 혹은 건강과 안전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않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WTO 내에서 국내차원에서 제품관련 PPMs 요건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규범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 이해와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가능한 요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 제품비관련 PPMs

제품비관련 PPMs는 환경피해가 제품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생산되는 방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즉, 환경문제가 생산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이다. 제품비관련 PPMs에 의한 환경영향은 i) 월경성 환경오염, ii) 이동생물종 및 공유생물자원, iii) 지구적 환경문제, iv) 국내 환경문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그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국경 밖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산 외부효과인 경우에 각국의 정책주권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면 환경문제를 접근하는데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하여는 당사국간의 적절한 공유성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자국의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나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위하여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자간 환경협약과 관련하여 무역조치를 포함한 PPMs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1) 다자간 환경협약에 따라 취해지는 경우
- (2) 다자간 환경협약에 의하여 위임받아 취해지는 경우
- (3) 다자간 환경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준하여 취해지는 경우

그러나 다자간 환경협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첫번째 문제점은, 다자간 환경협약 목적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비체약국의 처리 문제이다.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이 다자간 환경협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행위 그 자체로 협약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약국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환경적 이익은 생산거점이 비체약국으로 이동함으로써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환경부존과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차이, 환경준수 비용 혹은 설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의 부족 등을 이유로 다자간 환경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무역조치 보다는 기술이전, 재정적 지원 혹은 다자간 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유연한 규정 등을 통한 상호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긴급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다. 그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국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조치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PPMs가 한 국가의

자국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 질 때, PPMs를 변경시키려는 자국의 정책은 역외성으로 볼 수 있다.

제품비관련 PPMs 요건에 대하여 국제적 조화를 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분제의 PPMs가 월경성이나 지구적 환경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 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엄격한 제품비관련 PPMs 요건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관행으로 인한 비용이 제거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제품비관련 요건의 국제적 조화에 대한 요구는, 자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해결책은 자국의 경제조건과 사회적 선호를 반영하는 자국의 정책결정과 평가에 기초한다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화 되기 어렵다. 그리고 제품비관련 PPMs 요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가 비교우위를 가장한 경우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리우선언 원칙 11에서 기술되었듯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졌다.¹⁶⁾

반면, 월경성이나 지구적 환경영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PPMs 요건에 대한 국제적 조화나 상호 인식이 보다 적절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PPMs 요건에 대한 적법성을 결정할 권리를 어느 국가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PPMs 요건에 대한 기준과 근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합의의 정도와 국가간 다양한 요인을 어떻게 고려하는가가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각국의 서로 다른 PPMs 요건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수단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경쟁력 문제와 관련하여 보조금, 상계관세 혹은 그외의 다른 조치들이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1) PPMs와 월경성 환경오염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PPMs 요건은 특정 원자재 사용의 제한이나 일반적인 실행요건으로 나타난다.¹⁷⁾ 각국은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타국 혹은 자국의 관할구역 밖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¹⁸⁾ 따라서 환경영향을 받는 국가는 환경피해의 근원이 되는 국가로 하여금 그 국가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환경규제를 통한 환경피해의 규제를 타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월경성 환경오염의 PPMs에 대한 직접통제와 규제는 관련 당사국간의 지역적 협력을 통하여 달성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실행요건에 근거한 PPMs 요건이 바람직한 환경효과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각국은 환경영향, 환경부존 혹은 환경비용이나 환경정책의 선호도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당사국간의 협력이 쉽지는 않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국가가 위한 PPMs 요건에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염발생국은 역외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의 비용-편익 분석에 입각하여 환경비용의 일부를 내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염발생국에 의한 환경영향의 규제나 공유비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16) 리우선언 원칙 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관리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강제, 사회적 비용을 조래할 수도 있다.”

17) 원자재의 추출 혹은 제품의 생산에 관한 것, 화학품 혹은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사항, 토양과괴, 산성비 혹은 수질오염 등.

18) 리우선언 원칙 2 “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수입국은 수출국에 비용의 내부화를 전가시키기 위한 무역제재나,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제품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수용하게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2) PPMs와 이동생물종 및 공유생물자원

이동생물종 및 공유생물자원이란 한 국가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원을 말한다. 즉, 한 국가의 관할구역으로부터 자국 관할구역의 밖이나 타국으로 이동하는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식지가 여러나라에 걸쳐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속성 때문에 관리와 보존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동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수출입 제한이나 무역규범 혹은 PPMs에 근거한 조치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오래 전부터 이루어 왔다. 지금까지 사용된 무역제한은 주로 제품의 획득에 관한 것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생물종의 수출입이 금지되었고, 이들 생물종으로부터 추출된 제품의 수출입도 금지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생물종에 대한 관리제도의 일부로서 제품비관련 PPMs 요건에 근거한 무역규범을 포함하는 국제적 합의도 있었다.¹⁹⁾ 그러나 비체약국의 행동은 국제적 합의에 대한 실행과 목적을 쉽게 약화시키곤 하였다.

3) PPMs와 지구적 환경문제

지구적 환경문제란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로서 모든 국가들에 의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전혀 행동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행동을 한다면 치유책은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행동은 국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국제적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환경과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제3국도 이 합의의 체약국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몬트리올 의정서는 비가입국이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을 증대시켜 가입국의 오존층 보호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과 투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무역제한을 부과하는 조문을 설정하고 있다.²⁰⁾ 따라서 비가입국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관련 조항은 GATT 제1조(최혜국 대우)와 제11조(수량제한금지)에 위배된다. 그러나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무역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GATT 제20조의 (b)항과 (g)항에 의하여 비가입국에 대한 차별조치가 허용된다.

19) PPMs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1911년 영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북극지역의 물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한 [Conven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Fur Seals]와, 1989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 남태평양 6개국이 그 지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자망을 이용하여 포획한 어류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Wellington Convention for the Prohibition of Fishing with Long Driftnets]가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1973)]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 몬트리올 의정서는 비가입국에 대한 차별조항이 그 추종을 이루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국은 지구오존층 파괴물질을 비가입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또 관련기술을 비가입국에 수출하여서도 안된다. 이렇게 비가입국을 차별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을 협약에 가입시키기 위해서이다.

4) PPMs와 국내 환경문제

리우선언 원칙 2와 관련하여 환경피해를 받는 자국이 해결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국은 경제적 수단이나 규제를 통하여 환경적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PPMs 요건을 수립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국에 달려있다.

5) 제품비관련 PPMs와 무역

제품비관련 PPMs와 관련된 무역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생산방식에 적용하는 수입국의 PPMs 요건에 따라 수입품을 제한하려 할 때 발생한다. 이는 이러한 자국의 PPMs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타국에까지 전가시키는 것이며, 관련 국가간 국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국내법을 자국 관할권 밖에까지 적용시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대부분 역외성(extra-jurisdictionality)을 유발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범과의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GATT 규범에서는 이러한 무역조치가 각국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타국에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PPMs 조치가 상호간의 인식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이 단지 도덕적 가치나 민족적, 문화적 선호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때도 국가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외부효과가 월경성, 지구적 환경효과를 갖는 경우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관련국간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특정한 PPMs 요건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목적과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관련국가간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

IV.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시 고려사항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i)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사용하기 위한 동기(Motivation), ii)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타당성(Feasibility), iii) 환경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유효성(Effectiveness), iv)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상대적 효율성(Efficiency) 등이다.²¹⁾

1. 동기(Motivation)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을 고려할 때는 그 무역조치 이면에 존재하는 동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PPMs 조치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동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가 매우 복잡하고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거나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동기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사용하는 동기로는 i) 환경적 동기, ii) 경쟁력 동기, iii) 가치관 동기 등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1) OECD(1997) 참조.

(1) 환경적 동기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 사용에 대한 환경적 동기는 보호하고자 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i) 국내환경(수입국), ii) 공유환경(수출입국, 월경성, 지구적 환경), iii) 외국환경(수출국)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국내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수입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해로부터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로부터 취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제품의 기준을 정하고 소비 외부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수입품에게도 요구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기준은 수입국에 폐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생산방법과도 연관이 있다.²²⁾

한편, 생산 외부효과가 여러국가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공유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로부터 취해진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구적 생태자산(오존층,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나, 부분적으로 여러나라의 관할구역 하에 있는 자원에 대해 환경적 폐해를 야기시키는 일부 국가의 생산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PPMs 요건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적 혹은 다자간 환경협약의 이행이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로서 주로 취해진다. 비록 월경성, 지구적 환경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협약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국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환경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혹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협약은 비체약국으로 인해 약화되고 체약국에 의해 위반되어 질 수 있다.

환경효과가 타국에까지 파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국은 외국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자국 정부는 다른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공정 및 생산방식의 형태에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며, 환경파괴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자국의 환경적 PPMs 요건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자국과 외국에서 모두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형태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현재의 무역규범하에서는 생산 외부효과가 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의 환경적 선호나 환경요건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무역조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 사용에 대한 환경적 동기는 접근 대상이 되는 환경분제의 유형에 따라 i) 오염문제와 ii) 자원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오염문제와 관련하여는 정확한 오염원을 구별하기 어려운 월경성, 지구적 오염의 경우에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나 여론 그리고 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단지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만 무역조치가 사용될 뿐이다.²³⁾ 따라서 몬트리올 의정서를 제외하면 월경성, 지구적오염에 대한 대부분의 협약은 비용과 경쟁력을 이유로 PPMs 요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나 이동성생

22) 예를 들면, 화학제품에 대한 기준, 살충제 사용, 수입목재의 열처리 방법,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음식물의 기준 등이다.

23)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 등의 물질의 사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1987)에서는 CFC 등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서의 CFC 사용규제도 규정되어 있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를 다자간 환경협약으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실시기로 예정되었던 생산공정에서의 CFC 사용규제는, 94년초에 개최된 회원국 총회에서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물자원의 파괴와 같은 자원문제에 있어서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종종 사용된다.²⁴⁾ 대부분의 무역조치는 이러한 종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2) 경쟁력 동기

경쟁력 동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국의 환경요건으로 인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국제시장에서 약화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²⁵⁾ 엄격한 환경규제는 자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변화를 자극하며, 투자를 촉진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신규 환경관련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PPMs 요건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는 부정적인 경쟁력 효과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관련 상계관세 혹은, WTO에 위배되는 무역조치 등의 도입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3) 가치관 동기

가치관에 의해 유발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주로 수입국에서 발동하여 수출국의 PPMs 요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에 근거한 동기는 수입국의 가치관이나 선호도를 수출국에 강요하면서, 보다 강한 자국의 이성적 가치관이나 선호도와 마찰이 되는 타국의 PPMs에 대한 자국 소비자의 반대외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아니한 가치관으로부터 야기된 PPMs 요건은 국가간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월경성, 지구적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한 국가의 가치관에 근거한 동기는 문화적 요인 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기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구적 환경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환경비용의 내부화나 생물종의 보호, 지구적 환경과 같은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번영이나 현재의 소득증가가 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PPMs 요건에 대해서도 각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 (1)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관 혹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 (2) 정치체제의 차이
- (3) 환경영향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의 차이
- (4) 과학적 근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
- (5) 환경문제를 접근하는데 가능한 기술과 재정능력의 차이

24)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 남태평양 6개국이 이 지역의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9년에 웰링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유자망을 이용하여 포획된 모든 어류 및 어류제품의 수입을 가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Michael E.Porter and Claas van der Linde(1995) 참조.

이와같이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동기는 다양하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문제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집단은 여러 형태의 상이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PPMs 조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한 국가의 환경적 동기는 다른 국가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국제적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입국의 환경이 수출국에서 사용된 PPMs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즉 월경성이나 지구적 환경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자국의 환경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입국의 무역조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면 경쟁력이나 가치관에 근거한 동기인 경우에는 제품비관련 PPMs 조치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환경적 문제나 목적의 경우에 취해지는 무역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위장된 보호무역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타당성(Feasibility)

환경목적 달성을 위해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은 기술적,경제적,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중 교역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생산방법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술적인 면이 가장 어렵다. 특히 물리적으로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PMs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PPMs를 조사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PPMs 여부는 수출국에서 제시하는 생산방법에 대한 인증서에 의해 입증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확인서,인증서 제도에 대한 관련국들의 협조와 그와같은 제도에 대한 상호인식은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로 위생 및 검역조치의 분야에서 제품관련 PPMs 조치를 사용할 때 확인서, 인증서 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일 경우에는 관련국간 수입품에 대한 인증서 제도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PPMs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규제대상이 되는 PPMs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품보다 더 광범위한 제품의 영역에서 무역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규범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인 조치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한편,경제적 측면에서 제품비관련 PPMs를 위한 확인서,인증서 제도의 실시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제품관련 PPMs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확인서,인증서 제도하에서도 개도국의 영세 생산자나 수출업자는 비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특정 PPMs 자체를 명시하여 규제하는 것보다 환경영향과 관련된 PPMs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비용과 무역제한 면에서 보다 더 선호된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에서 제시한 환경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가 기술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면 비용면에서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규범의 측면에서 소비 외부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물리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유사한 제품들간의 차별성 문제와, GATT에서의 동종제품과의 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규범과 원칙은 수입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수입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의 특성에 기초한 수입제한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GATT의 분쟁 패널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PPMs 관련 요건에 근거하여 동종제품간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동종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GATT 패널은 동종제품에 대한 개념과 적용을 경우에 따라

서 각각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유사한 제품들을 차별할 때는 제품에 대한 차별이 보호무역을 회피하는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유효성(Effectiveness)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을 고려할 때 정책 수립자는 이러한 조치의 가능한 효과를 신중히 평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환경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별로 상이한 생태학적인 조건,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한 국가에서 적합한 환경적 PPMs 요건은 타국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국의 환경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유효성은 다음의 여러 요인에 의존한다. 즉, 수입국의 시장 지배력,규제대상이 되는 산업의 무역의존도,무역량과 무역의 향방,그리고 규제수단의 형태와 규제요건의 가능성과 적합성 등이다. 그러므로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한 대다수 국가들에 의해 공동으로 취해지는 무역조치는 타국으로 하여금 환경협약에 가입하게 하거나,환경적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몇몇 국가에 의해 취해지는 무역조치는 타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다. 그러나 특정 제품을 다룰때는 그 국가의 상대적인 경제,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국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강한 수입국일수록 수출국이 사용하고 있는 PPMs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²⁶⁾

그리고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효과는 사용되는 무역수단에 어느정도 달려있다. 특히 PPMs 요건에 의해 규제받는 제품의 무역량이 적거나 미미할 때는 환경정책 변화와 관련된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금지나 제한 보다는,폭 넓은 일반적인 무역제재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무역제재는 상대국의 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조치보다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무역수단이 보다 효과적인가는 환경적 혹은 경제적인 목표에 달려있다.

4. 효율성(Efficiency)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은 사용 가능한 다른 정책 수단과 비교되는 비용과 부정적인 영향에 달려있다. 따라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상대적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 환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혹은 환경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이상의 조치인지의 여부, ii) 규제수단의 영향이 불필요하게 제한적인지의 여부, iii) 지나치게 복잡한 관리체제나 위장된 수출입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인지의 여부, iv) 다른 무역수단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무역효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v) 무역조치가 의도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차별적인 무역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26) 이와같은 관점에서 미국과 EU는 타국의 환경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V.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 이외의 다른조치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있어서 그 무역조치가 유효성,타당성 및 효율성면에 서 문제가 있다면, 정책 수립자는 특정한 환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다른 조치로는 비무역조치나 덜 무역제한적인 무역조치인 i) PPMs에 대한 국제적 조화나 상호인식, ii) 경제적 수단의 사용, iii) 재정적,기술적 인 지원책, iv) 환경마크제도 등이 있다.

1. PPMs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

PPMs 요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는 무역에 상당히 유익하며, 특히 PPMs 요건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더욱 유익하다. 국제적인 조화로 인하여 수출업자와 투자자는 불확성을 줄일 수 있고 시장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또한 PPMs 기준이 적정한 수준으로 수립되어져 있으면 국제적인 조화는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환경 흡수용량과 환경 우선순위를 반영하면서 각자 다양한 PPMs 요건을 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PPMs 요건이 타국에서는 전혀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오히려 타국에 적용될 경우 환경과 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적 조화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정도는 환경적 요건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환경효과가 단지 자국에 국한된 것인지 혹은 월경성,지구적 환경효과를 수반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제품관련 PPMs와 관련하여 WTO의 TBT와 SPS협정은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보호무역 조치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자국의 표준과 규제를 국제적인 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표준과 규제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제표준에 의한 것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 무역왜곡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표준과 규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제품비관련 PPMs 요건에 대하여는 국제적 조화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며 국내 환경문제인 경우에는 그 가능성도 어렵다. 환경조건과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환경과피와 오염문제를 접근하기 위하여 각자 다양한 PPMs 요건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기초한 제품비관련 PPMs 요건에 대한 국제적 조화는 월경성,지구적 환경문제를 접근하는데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조화는 각국의 다양한 환경조건,책임,능력 그리고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국제적인 환경협약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경제적 수단

최근에는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규제 수단이나 자발적 접근방법과 더불어 경제적인 수단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수단은 기술혁신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나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경제적 수단은 아직 개발 단계이며,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인 수단으로 오직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수단의 무역효과는 적용되는 시장과 경제적 수단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잘 계획된 경제적 수단은 환경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소비형태와 무역형태를 유도한다. 그리고 경제적 수단은 불필요한 무역왜곡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 규범과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때는 외국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경제적 수단의 투명성과 수입 중립적임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경제적 수단이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면, 교역 상대국과의 의견교환과 적절한 사전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입국의 환경조건과 환경선호도를 반영하는 기준에 준거하여 수입품에 적용하는 경우에,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경제적 수단은 자국의 관할권 밖의 무역효과와 무역차별을 초래한다. 따라서 경제적 수단의 타당성,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뿐만 아니라 개발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1) 환경세

환경세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생산행위에 부과되며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행위를 변형시킬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환경세는 가격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시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환경세는 직접규제 조치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보다 쉽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과수준, 수요의 탄력성, 부과 제품의 범위 그리고 수입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환경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환경세는 환경제품세와 환경공정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WTO 규범하에서 환경제품세는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s)²⁷⁾의 대상이 되는 반면, 환경공정세의 국경세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WTO 국경세조정 규정은 제품 자체의 특성에 기반한 국내조치의 수입품에 대한 적용은 허용하지만,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방식 및 여건의 차이에 기반한 국내조치를 수입품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환경제품세는 동종 수입품에 부과될 수 있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공정세는 동종 수입품에 부과될 수 없으며 수출환급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WTO의 국경세조정은 제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에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제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PPMs에 대한 환경세보다는 제품에 대한 환경세가 상대적으로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투입요소가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투입요소에 대한 환경세는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²⁸⁾ 또한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는 탄소세와 같이

27) 국경세조정은 수입품 또는 수출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경쟁품의 가격조건과 맞추어 증과 동시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과한 조세를 환급하여 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국내의 동종제품과 동일한 조세를 부과한다.

28) 1987년 미국이 슈퍼펀드법(1986년)에 의거 국경세조정을 시행한 바, 이에 대해 캐나다, EC, 멕시코는 GATT에 제소하였다. 이 분쟁사례에서 GATT 패널은 과세대상인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시 그에 상응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시 환급해 주는 미국의 조치가 GATT 규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도 국경세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요소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직접성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2) 배출권 거래제도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의 결과에 따르면, 부속의정서 I(ANNEX 1)에 포함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가스의²⁹⁾ 배출량을 2008-2012년 기간 중 1990년 대비 평균 5.2% 삭감된 수준에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목표배출량을 초과한 국가가 배출여력이 있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Permit Trading)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는 시행 초기 단일오염물질, 단일산업 중심에서 점차 대상오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규제의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정책으로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³⁰⁾ 배출권 거래제는 두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환경정책으로 평가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라는 외부불경제가 오염배출권(Emission Permit)이라는 재산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권의 배분상태와는 상관없이 시장거래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2) 국가, 산업, 기업 그리고 설비를 포함하는 개별오염원의 한계오염 저감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용최소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환경정책이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규제당국이 전체 혹은 특정지역의 환경부하가 고려된 총허용 오염배출량을 설정하여 오염배출권을 공급할 경우, 개별오염원은 할당된 오염권이 허용하는 오염배출량의 범위에서 오염저감을 위한 한계비용과 배출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오염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실제 오염배출량을 결정한다. 즉,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오염물질을 할당된 이하로 배출하여 배출권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오염저감을 위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배출권의 구매를 통해 할당분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염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고 개별 경제주체가 이윤극대화 노력을 기울인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정해진 총허용배출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생산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재정적, 기술적 지원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PPMs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책은

29)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O₂)), 메탄(Methane(CH₄)), 질소산화물(Nitrous oxide(N₂O)), Hydrofluorocarbons (HFCs), Perfluorocarbons(PFCs), Sulphur hexafluoride(SF₆).

30)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은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의 이산화황(SO₂) 거래 시장이다. 미국은 1990년 대기정화법 개정(Clean Air Act Amendments)에서 SO₂ 배출권 시장을 법제화하여 전력산업의 SO₂ 발생량을 2000년까지 8,500만톤을 저감하여 1980년도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1단계 시작 연도인 1995년에는 총 110개의 대규모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거래시장을 적용하였고, 제2단계 시작 연도인 2000년까지는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을 거의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보완적 혹은 대체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국가들은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자간 환경협약을 준수할 수 없거나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환경협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그들로 하여금 PPMs 요건을 이행하는데 수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환경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간주될 때에는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¹⁾

4. 환경마크제도(Eco-Labeling)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환경 친화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에 관련 마크를 부착시키는 제도이다.³²⁾ 제품의 초기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품의 전주기적 분석(Life Cycle Assessment:LCA)이 대두되면서, 민간부문에서 환경마크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마크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비정부 기관에 의해 자발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보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생산방식을 개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는 일방적으로 수입국의 환경선호도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많다. 더구나 환경마크가 없는 제품이 사실상 유통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된다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 환경마크가 제품의 판매 및 구매의 주요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환경마크는 직접규제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며 제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환경마크의 인정기준이 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품의 전주기평가(LCA)에 의한 환경마크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제품의 PPMs의 오염부하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동종제품간의 무차별성을 규정하는 GATT/WTO 협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기준이 국내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환경마크제도는 외국의 생산자에 대해 실질적인 차별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수입국의 환경우선순위 및 기술을 주로 반영하여 형성되며, 수출국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제품이나 생산방식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환경여건에 적합치 않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수출국에서는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경기술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마크제도의 잠재적인 무역장벽 요소를 완화,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마크제도의 형성 및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가 제품자

31) 예를들어 몬트리올 의정서는 개도국이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을 설치, 운영(제10조)하고 있다.

32) 환경마크제도는 1977년 독일의 Blue Angel로부터 시작되어 캐나다의 Environmental Choice, 일본의 EcoMark, 노르딕의 White Swan 등을 위시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대부분 정부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의 Green Seal, 국제적인 Flipper Seal-of-Approval, SCS Forest Conservation Program 등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EcoMark로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체의 환경친화도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전단계에서의 환경평가에 기초하고 있을 때, 만약 환경마크제도가 제품비관련 PPMs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범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환경마크제도의 투명성 확보 문제를 넘어서 PPMs에 기반한 조치가 WTO 규범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³³⁾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환경마크제도는 현 WTO 체제하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³⁴⁾ 그러나 WTO 무역환경위원회는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마크제도가 무역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환경마크의 객관적인 근거, 환경마크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상호인증 방안 및 국제표준과의 연계를 논의하고 있다.

VI. 요약 및 결론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조는 최근에 들어서 점차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 다자간 환경협약에 무역조치가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무역조치가 다자간 환경협약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지구환경문제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개별국가들이 환경을 이유로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발동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와같이 무역조치가 환경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은 무역조치가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무역조치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정책수단이 되는 이유로는,

- (1) 대부분의 경우에 무역규제 조치의 효력은 조치의 발동 이전에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달성된다.
- (2) 무역규제 조치 실시 또는 무역제재 조치를 발동하겠다는 위협은 대상이 되는 국가의 해당 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증폭된다.
- (3) 무역규제 조치는 제품을 가공·처리하여 재수출하는 중개국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조치의 누수현상도 막을 수 있다.
- (4) 다자간 환경협약의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며, 따라서 비가입국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압력으로도 작용된다.

33) 미국은 1990년 참치가공품에 대한 라벨표준을 규정한 돌고래보호 소비자 정보법(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 소비자 정보법에 의하면 i) 열대태평양 동부 북남미주 연안 수역에서 건척망을 이용하여 포획한 참치의 가공품과, ii) 기타 공해수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하여 포획한 참치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또는 기타 그러한 의미를 시사하는 용어를 사용한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 동 소비자 정보법은 라벨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라벨 부착시에는 이 법에 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사상의 벌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1990년 미국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멕시코산 참치 및 참치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GATT에 이 문제를 제소하였다. 멕시코의 제소 사유 중 하나는 돌고래보호 소비자 정보법의 라벨표준에 관한 규정이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제1조(최혜국대우원칙) 및 제9조(원산지표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돌고래보호 소비자 정보법의 라벨표준에 관한 규정은 제1조 및 제3조(내국민대우원칙)에 부합하며 제9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GATT 패널은 동 정보법에 의한 라벨규정은 제9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라벨부착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규정이고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 GATT 제1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 (1) 무역규제 조치의 효과는 그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와 그 대상이 되는 국가의 상대적 힘의 차이에 좌우된다. 규제조치 발동국과 대상국의 상대적 시장규모의 차이, 규제조치 대상국의 대외의존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제사회에서의 당사국의 위치 등의 요인에 따라 무역규제 조치의 효과는 결정된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실시할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거나, 개도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무역규제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
- (2) 환경보전을 이유로 내세운 무역규제 조치가 위장된 보호무역 조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현행 WTO 규정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 (1)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경규제 조치 및 환경세는 WTO의 기본원칙인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입품과 국내 유사제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2) 동일한 조건의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arbitrary or unjustifiable) 차별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무역에 있어서 위장된 무역제한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 (3) 제품에 대한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는 여타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GATT 제20조(일반예외규정), TBT, SPS협정 등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 최소무역제한성, 투명성, 비례성, 보환성 등의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예외적인 무역규제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 (4) PPMs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경규제 조치 및 환경세는 자국내의 PPMs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WTO 규정하에서 예외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자발적인 선택규정으로서 수입국의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³⁵⁾

한편,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는 환경목적으로 취하여진 무역조치를 WTO가 수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의제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현단계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다자간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전반적인 합의를 하였다.³⁶⁾

- (1)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다자간 환경협약은 소수이며, 현재까지 다자간 환경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용된 무역조치로 인한 WTO의 분쟁사례가 없었다.
- (2) 현행 WTO 규범에는 다자간 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환경

35) 예를 들어 특정 생산행위의 환경성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환경마크제도의 경우, 환경마크의 부착이 의무 규정인 경우에는 WTO 규정에 위배되지만, 자발적인 규정인 경우에는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36) WTO(1996), PRESS/TE 014 참조.

- 목적의 무역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가 있다.
- (3) 법적인 불일치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적 차원에서 환경 및 무역담당관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 (4) 당사국간에 무역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역조치로 인한 당사국간의 분쟁이 WTO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5) 앞으로 다자간 환경협약의 협상에 있어서,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조치 도입을 고려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6) 월경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적인 협력과 합의에 근거한 다자적 해결방법이다.

대부분의 환경규제는 제품의 전주기(Life Cycle)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논의는 수입품의 PPMs에 근거하여 수입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모아졌다. PPMs에 대한 환경요건은 국내 환경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건이 제품의 국가간 교역에 적용되어 수입품에 대해 무역조치가 취해질 경우, 관련 환경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을 벗어나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오용 혹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무역조치는 타국의 환경관련 정책 및 조치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국의 정책 주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규범은 제품자체의 특성,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식에 기반한 무역조치는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보되는 투입요소,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공정 등에 기반한 무역조치는 포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역규범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무역조치가 GATT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GATT/WTO의 규범은 PPMs 요건을 달성시키기 위한 재정적 조치나 규제의 사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GATT 제III조의 목적을 위한 동종제품에 대한 구별도 최근에는 규제조치의 정책목적을 고려한 해석과 함께 최종 제품의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GATT/WTO가 국가간 교역을 규율하는 규범에 제품비관련 PPMs 요건을 반영시킬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PPMs 요건이 보호주의적인 목적으로 쉽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PPMs 요건을 교역 상대국에게 강요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은 수입국의 PPMs 기준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영토 밖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PPMs 관련 조치는 환경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무역조치는 PPMs에 근거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다. 단지 제품기준 또는 PPMs 기준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사용은 지구적 환경복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의 틀안에서는 허용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월경성, 지구적 환경영향이 없는 경우에 수입국의 PPMs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최근에 선진국들은 PPMs에 대한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각종 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자간 환경협약은 협약의무의 강화추세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의 사용을 확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 및 환경조치가 보다 포괄적으로 다자간 무역규범에서 허용·수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규범의 집단적 해석 혹은 개정을 통하여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 및 환경조치가 불필요한 무역효과를 동반할 경우, 이러한 조치의 남용·오용을 억제하고 또한 부정적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무역조치를 철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주로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막기 보다는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후처리방식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비관련 PPMs에 근거한 각종 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만옥 외, *OECD 환경정책과 국내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81호, 1996.
- 김승진, 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세계경제 94-02, 1994.
- 이동걸, *무역과 환경*,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70호, 1995.
- 이호생,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32, 1993.
- 이호생, *무역과 환경: GATT/WTO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5-02, 1995.
- 이호생, *무역과 환경의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5-09, 1995.
- 장희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법적 한계", *통상법률*, 제17호, 1997.
- 최병철,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성곡논총* 제25집, 1994.
- 최병철, "환경규제와 수출경쟁력 분석",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6권2호, 1996.
- 최석영, "무역·환경문제와 WTO", *통상법률*, 제13호, 1997.
- 한택환,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4-04, 1994.
-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5-05, 1995.
- 환경부, *환경백서*, 1997.
- Anderson, Kym and Richard Blackhurst, *The Greening of World Trade Issues*, 1992,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uckley, Ralf,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Journal of World Trade*, 1993, August, 27 No.4.
- Charnovitz, Steve, "Improving Environmental and Trade Governanc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ffairs*, 1995, Winter, Vol.7, No.1.

- Esty, Daniel C., *Greening the GATT*, 1994, IIE, Washington D.C.
- Kometani, Kazumochi, "Trade and Environment: How Should WTO Panels Review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GATT Articles III and XX?",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1996, Spring 16(3).
- Lawrence, Robert Z., Dani Rodrik, and John Whalley, *Emerging Agenda for Global Trade*, 1996,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Washington, D.C.
- OECD, "Typology of Trade Measures Based on Environmental Product Standards and PPM standards, Joint Session of Trade and Environment Experts," COM/ENV/TD(1993)89.
- OECD, *Trade and Environment: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OECD Documents, 1994.
- OECD, "Report on Trade and Environment to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GD(1995)63.
- OECD,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OECD/GD(1995)124.
- OECD, "Trade Principles and Concepts," OECD/GD(1995)141.
- OECD, "Economic Globalisation and the Environment," C/MIN(1997)13.
- OECD, "Eco-Labeling: Actual Effects of Selected Programmes," OECD/GD(1997)105.
- OEC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PPMs): Conceptual Framework and Considerations on Use of PPM-Based Trade Measures," OECD/GD(1997)137.
- Poter, Michael E. and Claas van der Linde,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petitiveness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5, Vol.9, No.4.
- Schlagenhof, Markus, "Trade Measures Based on Environmental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Journal of World Trade*, 1995, Vol.29, No.6.
- Schoenbaum, Thomas J.,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rreconcilable Conflic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2, Vol.86.
- Thomas, Christopher and Greg A. Tereposky,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Journal of World Trade*, 1993, August, 27, No.4.
-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Trade and Environment: Conflicts and Opportunities*, OTA-BP-ITE-94, 1992, Washington D.C.
- Whalley, John, "Trade and Environment Beyond Singapore," NBER Working Paper 5768, 1996.
- WTO, "Report of 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1996, November, PREE/TE 014.
- WTO, "WTO Achieves Landmark Agreement on Financial Services," 1997, December, WTO focus, No.25.
- WTO, "1997 a Good Year for World Trade," 1998, January, WTO focus, No.26.